

지배구조내부규범

제 1 조(목적)

이 규범은 『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“금융회사 지배구조법”이라 한다.)』에 따라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.)의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이사회의 구성)

- ① 회사의 이사회는 모든 이사로 구성된다.
- ②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외이사를 3 인 이상 두어야 하며, 그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로 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,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⑤ 사외이사의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제 2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 3 조(이사회의 권한)

이사회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,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4 조(이사의 자격요건 및 권한·책임)

- ① 이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그 권한 및 책임은 이사회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.
- ② 사외이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역할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이사의 선임·퇴임)

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.

제 6 조(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)

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이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.

제 7 조(위원회의 종류·구성·기능)

-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 - 1. 감사위원회
 - 2. 임원후보추천위원회
 - 3. 리스크관리위원회
 - 4. 보수위원회
 - 5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법령 및 각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단,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③ 위원회는 각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집된다.

제 8 조(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)

회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운영 실적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,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임원의 자격요건)

임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임원의 권한과 책임)

임원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사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
제 11 조 (임원의 선임 및 퇴임)

- ① 임원의 임기는 별도의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대표이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의 추천을 통해 제 9 조에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선임한다.
- ③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자를 선임·관리할 수 있다.
- ④ 임원의 퇴임사유는 아래 각 호와 같다.
 1. 임기만료
 2. 중도퇴임
 3. 감독당국의 제재 및 기타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

4. 관련 법령에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
 5. 천재지변, 불의의 사고, 사망, 질병 등의 유고상황 등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
 6. 기타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⑤ 임원의 퇴임절차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.
 - ⑥ 임원의 유고 시의 업무대행자 및 후임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선임한다.
 - ⑦ 임원의 선임 또는 퇴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⑧ 임원의 임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이사회 의결 등 별도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임원 및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)

- ① 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제도는 교육훈련규정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② 회사는 임원후보자에 대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해당 교육평가의 결과를 임원의 선임 시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)

- ①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②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임원보수규정 또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③ 상기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14 조 (최고경영자 자격요건)

회사의 대표이사(이하 “최고경영자”라 한다.)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직무충실성, 전문성, 준법, 내/외부환경주시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.

제 15 조 (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)

-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및 계획 등의 수립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②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는 최고경영자에 대하여 제 11 조 제 4 항에 정한 임원의 퇴임사유가 발생하거나, 기타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서 개시된다.
- ③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최고경영자 업무대행자를 선임한다.

제 16 조 (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)

- ①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15 조에 정한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시일 내에 최고경영자 선임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최종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완료한다.

제 17 조 (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절차)

- ① 최고경영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.
- ②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의 검증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한다.
-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,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 18 조 (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)

이사회는 연 1 회 이 규범 제 14 조 내지 제 18 조에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제 19 조 (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)

-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는 인사업무 담당부서로 한다.
- ②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- 1.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 · 검증 업무지원
 - 2. 기타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또는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

제 20 조 (책임경영체제)

-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임기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한다.
- ② 최고경영자의 권한 및 책임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③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④ 최고경영자의 해임 및 퇴임사유에 대해서는 제 11 조 제 4 항을 준용한다.

제 21 조 (보칙)

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, 이사회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 (2016.8.1.)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범은 2016년 8월 1일부터 제정·시행한다.

제 2 조 (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최고경영자승계 관련 규정에 대한 경과규정)

제 7 조, 제 17 조 및 제 19 조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제 14 조 내지 제 20 조에 따른 최고경영자승계 관련 규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설치·운영 및 시행하며,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·운영되기 전까지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.